

 신안산대학교	학생 지도비 및 지원금 지급 규정	규정번호 2-5-17 제정일자 2017. 4. 25. 개정일자 2024.3.20. 책임부서/팀·계 입학학생처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신안산대학교 교직원들의 학생 단체 활동 지도, 학생 교과외 활동 지원, 각종 생활지도 등 건실한 교육성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학생지도에 대한 제반 경비 보조를 위한 학생지도비 및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제2조(지급범위) ① 지도비는 학생자치기구의 활동을 지도하는 교직원 및 학과에서 실시하는 학생 단체 활동을 지도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.

② 지원금은 학생 교과 외 활동을 실시하는 학과 및 학生活동을 지원하는 부서에 지급할 수 있다. <2019.11.14. 개정>

제3조(지도비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단체 활동 등에 대한 지도 및 인솔 교직원에 대하여 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단, 출장비와 종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.

1. 학과 현장견학 인솔
2. 학과 MT 및 단합대회 인솔
3. 학과 수학여행 및 졸업 여행 인솔
4. 학생 자치기구의 연수 인솔
5. 학생 자치기구의 활동 지도
6. 학생 단체(동아리 등)의 활동 지도 <2019.11.14. 개정>

제4조(지원금) 원활한 학생 교과 외 활동 및 학생 단체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.

1. 학과 현장견학
2. SAU Festival 및 SAU Expo 참여 학과
3. 학생자치기구 지원
4. 봉사활동 지원
5. 총동문회 지원
6. 그 밖에 총장이 허가하는 교과 외 활동 <2019.11.14. 개정>

제5조(지급 및 정산) ① 제3조(지도비)의 1호,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지도비와 제4조(지원금)의 1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행사 5일전(토요일, 일요일, 국경일 제외) 허가원을 입학학생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 한다. <개정 2023.3.30., 2024.3.20.>

② 제3조(지도비)의 4호, 5호, 6호에 해당하는 지도비와 제4조(지원금)의 2호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주관 부서인 입학학생처의 행사 및 활동 지원 계획에 따라 지급한다. <개정 2023.3.30., 2024.3.20.>

③ 지도비 및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제6조(지원금 사용)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1. 교통수단 비용
2. 다과 및 식비 비용

3. 입장 및 관람권 비용
4. 관련기관 관계자와의 실무협의에 소요되는 다과, 식사, 선물 구매의 비용 단, 법률 제16324호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<2019.11.14. 개정>

제7조(지원금 정산) 지원금의 정산은 행사가 종료된 후 5일 이내 별도의 양식(영수증 첨부)에 따라 결과보고서와 함께 입학학생처에 제출한다.<삭제> <개정 2019.11.14., 2023.3.30., 2024.3.20.>

제8조(지급정지 및 환수) 지도비 및 지원금은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지급정지 또는 환수한다.

1. 행사가 취소 된 경우
2. 지원금을 제6조(지원금 사용)에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
3. 기타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* 별표1

구분	학과 수학/졸업여행	학과 연합MT 및 MT대체 단합대회	학과 현장견학	A) 기타학과 행사
제한사항	시행횟수	재학기간 중 1회	시행횟수 제한 없음.	
	참가인원	재학생의 50%이상 필히 참가(반별 / 주간반 / 야간반별로 나누어 시행할 경우에도 동일적 용)단, 위탁반은 참가율에서 제외	재학생의 50%이상 필히 참가. 단, 위탁반은 참가율 에서 제외	B) 10명 이상 필히 참가. 단, 야간 작업은 인원수 제한 없음
	지도교수참가인원	지도교수는 필히 참 가. 단, 학과조교는 의무 사항 아님 ※<표1> 참조	지도교수 필히 참가.	인원수 제한 없음. 단, 참가횟수 상관 없이 지도교수 필 히 참석
인솔교수 학생지도비 지급		C) 중복사항	인원수 제한 없음. 단, 지도교수 또는 조교 1 인 이상 참석	
	1)기간기준 : 최대 3일 2)인솔교수 학생지도비는 학과 수학/졸업여행 연1회만 지급	1)기간기준 - MT : 최대 2일 - 단합대회 : 최대 1일 2)인솔교수 학생 지도비 연1회만 지급 하며, MT 및 단합대회 지도비 중복지급 불 가.	1)기간기준 : 최대 1일 2)인솔교수 학생 지도비 연1회만 지급 3)지원금 지급 4)지원금 및 학생 지도비 연1회만 지급	미지급
	※<별 표2> 참조			

A) 학과신입생환영회/학과체육대회/야간작업/사은회/10명 이상의 MT 및 LT 등

B) 「학칙 제8장 학생활동 제41조(학생활동의 사전승인)1항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」에 따름

C) 학과연합MT는 학생자치행사로 현장견학과 병행할 수 없음(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)

D) 학과연합MT 및 MT대체 단합대회와 현장견학을 같은 날 분리하여 시행하는 경우 지도비 중복
지급 불가

<표1> 학과 수학/졸업여행 참가인원에 따른 지도교수 인원표(지역별)

재학생 참가인원	지도교수
40명 이하	1명
41명 이상	2명

*별표2

• 학과 현장 견학					
직위	교수	부교수	조교수	전임강사 (강의전담)	겸임/초빙교수, 조교
지도비	40,000원	35,000원	32,000원	30,000원	25,000원
지원금	반당 100,000원				
• 학과 단합 대회					
구분		전임교수 (산증, 강의전담 포함)		겸임, 시간강사	조교
국내	내륙	1일 5만원		본인부담	1일 5만원
• 학과 MT					
구분		전임교수 (산증, 강의전담 포함)		겸임, 시간강사	조교
국내	내륙	1일 5만원 최대 2일까지 적용		본인부담	1일 5만원 최대 2일까지 적용
• 수학/졸업여행					
구분		전임교수		겸임, 시간강사	조교
국내	내륙	1일 5만원 최대 3일까지 적용		본인부담	1일 5만원 최대 3일까지 적용
	제주도	200,000원 (학생경비 실비지원 : 지도교수 1인)			200,000원
국 외	중국, 대만, 블라디보스토 크, 동북아시아	300,000원		본인부담	지원없음
	일본, 동남아시아, 괌, 사이판 그 외 국가	400,000원			